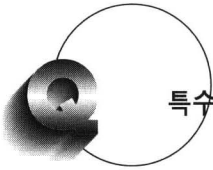




이 내용은 일본 『노동위생』지에 게재된 노동위생활동에 관한 Q & A를 번역한 것입니다. 산업보건관계자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 광 목

특수건강진단의 사후조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산업보건관리에 이용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들을 하여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일반건강진단의 사후조치나 특수건강진단의 사후조치는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건강진단의 의의는 질병의 조기 발견, 건강장해의 원인규명, 건강상의 문제점 발견, 건강상태의 경시적(輕視的)파악, 평상상태의 파악들에 있다고 보고 이를 잘 이해함으로써 건강진단의 사후조치를 단순히 건강진단의 뒷처리로만 생각치 말고 건강관리활동을 원활히 하고 건강을 유지, 나아가서 증진을 도모하자는데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경우는 특히 직장내의 유해한 인자나 부적당한 작업방법 또는 과대한 작업부담 등 때문에 건강장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좋은 산업보건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면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에도 건강진단결과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체적인 사후조치의 내용을 들여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1) 감독관청, 안전보건위원회, 당해작업부서 등에 건강진단결과 보고
- 2) 결과의 집계와 통계적 해석(부서별, 연차별 비교 등)
- 3) 유해업무 취업의 가부(즉 취업제한)
- 4) 작업환경측정결과와의 대비(작업환경개선에 대한 검토)
- 5) 작업방법, 수순 등의 재검토
- 6) 검진결과와 기록과 보전(보고서, 개인표 등)
- 7) 다음 검진과의 연계

대부분의 특수검진은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중 한번은 일반검진과 동시에 실시하여야 결과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관리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사후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유소견자와 무소견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보건관리자는 직무로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여야 합니다.

- 1) 건강에 이상이 있는 근로자의 발견 및 처치
- 2) 작업환경의 위생상의 조사
- 3) 작업조건, 시설 등의 위생상의 개선
- 4) 위생보호구, 구급용구 등의 점검 및 정비
- 5) 위생교육, 건강상담
- 6) 근로자의 부상 및 질병과 이로 인한 사망, 결근, 이동에 관한 통계작성
- 7) 기타 보건 일지의 기재와 기록의 정비

이중 대부분은 특수건강진단의 결과와 관계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우선 소견에 대한 근거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그 의미를 잘 이해시켜야 합니다. 검사치가 정상치를 얼마나 초과하고 있는지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성적과 비교하는 것인데 즉 결과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지? 그러한 경향이 보인다면 작업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빨리 그 원인규명을 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의 검사치와 비교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기용제의 특수건강진단에서 요중 대사산물의 양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근로자는 정상인데 한 근로자만 이상치를 보인다면 보호구 착용을 태만히 하여 그럴수도 있고 국소배기장치의 유효거리에서 벗어나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종합관점으로서 “경과관찰 필요”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유소견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다음 검진시기전에 수시로 추가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견이 없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경과관찰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록과 비교하여 검사치가 정상치에 비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점점 정상치에서 멀어져 간다든가 하면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만 경과관찰을 하는 경우 개인의 건강상 비밀을 요할때는 비밀은 지켜주어야 합니다.